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46 호 2022. 6. 2.(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26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42호[울산시티병원 증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47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59호[「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62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7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7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26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진장로 41	진장동 1023-1	2022. 5. 26.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6.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742호

## 울산시티병원 증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05. 27.(금) ~ 2022. 06. 07.(화)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p>가. 사업명 : 울산시티병원 증축공사</p> <p>나. 사업주체 : 송은의료재단 시티병원</p> <p>다. 시 공 자 : 한원종합건설(주)</p> <p>라. 설 계 자 : (주)엠펙티종합건축사사무소</p> <p>마. 감 리 자 : (주)엠펙티종합건축사사무소</p> <p>바.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07 (연암동 1261-6)</li> <li>○ 대지면적 : 7,714,00㎡</li> <li>○ 연 면 적 : 8184,36㎡</li> <li>○ 규 모 : 지하1층 - 지상6층</li> <li>○ 세 대 수 : 의료시설</li> <li>○ 공사기간 : 2021. 07.01 ~ 2022. 09. 30(15개월)</li> <li>○ 허 가 일 : 2021. 05. 11.</li> <li>○ 착공신고수리일 : 2021. 08. 06.</li> <li>○ 공 사 비 : 11,485,000,000 원</li> </ul> <p>사. 안전점검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점검비용 : 5,000,000 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금액 : 5,750,000원</li> <li>○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평균금액</li> </ul>

## 3. 안전점검 내용

##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정기안전점검	3	5,000,000	5,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			
계	3		5,0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2. 05. 27.(금) 17: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2. 06. 07.(화) 11: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2. 06. 07.(화) 12: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2. 06. 07.(화) 11:00까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2. 06. 09.(목)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28호\(2021. 3. 8.\)](#)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circ \text{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p>*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p><b>입찰가격</b> (낙찰하한율 86.745%)</p>	<p>60점</p>	<p>○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p> $* \text{평점} = 60 - 4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p>
<p><b>합계</b></p>	<p>100점</p>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 ~ 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

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바랍니다.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747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제정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22. 3. 1. 시행)에 따라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방식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관계법령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1조

#### 4. 제정 조례안 : 붙임참조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 2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농수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
- 전화번호 : 052-241-8094, 팩스번호 : 052-241-805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방식(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 호안(기슭 · 둑 침식 방지시설) · 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 · 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m <sup>3</sup>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 <sup>3</sup> 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text{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146^2 \times 60}$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p>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li> <li>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li> <li>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li> <li>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li> </ol> <p>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li> <li>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li> </ol> <p>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p>
<p>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p>
<p>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p>



<p>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p>
<p>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m<sup>3</sup>)당 100원</p>
<p>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p>	<p>가. 스케이팅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p>
<p>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p>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m<sup>2</sup>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m<sup>2</sup>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구청장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관계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759호

#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현재 생활안정 사업자금 용자한정대상에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되어 있는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더욱 폭넓게 생활안정자금을 운용하고자 함.

\*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한 점에서 구분됨)

### 2. 주요내용

- 가. 생활안정 사업자금 용자 대상자 결격조항 중 ‘피한정후견인’ 삭제 (안 제3조제2항)
- 나. ‘동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안 제5조)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3.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8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 2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mu111@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복지지원과
- 3) 팩 스 : 052-241-760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복지지원과(052-241-76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 출 자 : 복지환경국장

## 1. 개정이유

- 현재 생활안정 사업자금 용자한정대상에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되어 있는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더욱 폭넓게 생활안정자금을 운용하고자 함.

\*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한 점에서 구분됨)

## 2. 주요내용

- 가. 생활안정 사업자금 용자 대상자 결격조항 중 '피한정후견인' 삭제(안 제3조제2항)
- 나.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안 제5조)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3.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8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사전협의(승인)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분석 : '22. 5월중

사. 입법예고 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2. 6. 2. ~ '22. 6. 22. (예정)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2022-759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 2. 피성년후견인

제5조제1항 중 “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용자대상) ① (생 략) 1. ~ 5. (생 략) ②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용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다만, 질병·부상자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2. <u>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u> 3.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자</p>	<p>제3조(용자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 사람 ----- ----- ----- ----- ----- ----- -- 사람은 -----. 2. <u>피성년후견인</u> 3. ----- ----- 사람</p>
<p>제5조(용자신청) ① 생활안정자금을 용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u>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u>의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p>	<p>제5조(용자신청) ① ----- ----- ----- ----- 동 <u>행정복지센터</u>----- ----- -----</p>

의 재정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762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7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7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4, 소로3-186호선, 소로3-187호선)사업  
나. 명 칭: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소로3-187호선 외 2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 2.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창평동 1171-4번지 일원(변경없음)

#### 3. 사업규모(면적변경)

- 당 초 : 도로개설 L = 238m, B=4~6m, A= 1,470m<sup>2</sup>  
- 변 경 : 도로개설 L = 238m, B=4~6m, A= 1,469m<sup>2</sup>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가. 2020. 6. 11. ~ 2025. 6. 1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참조

#### 7. 열람기간: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 간

####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복구청 건설과

####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건설과(☎052-241-7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